

부산광역시사하구어린이집관리및운영조례중개정조례안
검 토 보 고

1. 제안이유

하단동 534-13번지에 위치하여 20년 넘게 운영되어오던 햇님어린이집을 당리동 309-5번지에 신축하여 이전함에 따른 조례개정 사유 발생

2. 관계법령

영·유아보육법 제7조 제1항(보육시설의 설치)

3. 주요골자

햇님어린이집 이전에 따른 공립어린이집 운영조례에 위치 변경(안 제2조제2호)

4. 검토의견

본 조례 개정건은

- 햇님어린이집이 하단동 534-13번지에서 당리동 309-5번지로 신축이전함에 따른 위치변경으로 각종 공부정리등에 필요한 조치라고 생각되며

○ 특히 하단동 기존시설물에서 운영되어오던 위 햇님어린이집은 도로변에 위치하여 통행하는 어린이들에게 장기간 불편과 위험이 상존하여 이전의 필요성이 널리 인정되어 왔던 점을 감안한다면 금번 신축 이전은 시의 적절하다고 판단됨

□ 따라서 위 조례 개정건은 적법타당하다고 사료됨